

화순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8. 4. 13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8. 4. 18
- 다. 상 정 일 자 : '98. 4. 17 (제61회 임시회 제1차 산업·건설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안설명자 :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
- 나. 개정사유
 -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화순군 직제규칙 개정에 따른 소관 업무 담당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개정코자 함.
- 다. 주요내용
 - 도시과장 → 도시주택과장 (안 제2조 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언태)

- 동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첨 부 : 화순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도시과장”을 “도시주택과장”으로 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 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<u>도시과장</u>이 된다.</p>	<p>제2조 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 - - - - - - - <u>도시주택과장</u> - - -.</p>